

호남제일고등학교 학교규칙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학칙은 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본교의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7.13>

제 2조 (명칭) 본교는 호남제일고등학교라 한다.

제 3조 (위치)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53 에 둔다.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>

제 2 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

제 4조 (수업연한)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초·중등교육법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5조 (입학자격)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7.12. >

1. 중학교를 졸업한자
2.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3.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>
4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<개정 2011.7.12. >

제 3 장 학과 학급 수 및 학생정원

제 6조 (학과)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일반학과(보통과)를 운영한다.<개정 2018.7.13>

제 7조 (학급 수)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8조 (학생정원) ①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정원으로 한다.<개정 2011.7.12. >

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(단,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한다.)<개정 2011.7.12. >

1. 국가유공자의 자녀 - 해당학년 정원의 3%이내<개정 2011.7.12. >
2. 특례 신입학(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) - 해당 학년 정원

의 3% 이내<개정 2011.7.12. >

3. 특례편입(2년 이상 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) 및 타 시.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주시로 이전된 학생, 기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원 외로 정하는 경우 학교장이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- 해당학년 정원의 5% 이내<개정 2011.7.12. >

제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

제 9조 (교육과정)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고, 2·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선택을 돕고,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><개정 2018.7.13>

제 9조의 2 (과외수업의 금지) <삭제 2011.7.12>

제 10조 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>

② 교외현장체험학습(소풍, 수련활동 등)은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한다.<개정 2011.7.12. >

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.<개정 2011.7.12. >

④ 학교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개인 체험학습으로 수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, 보호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체험학습의 교육목적 및 학생의 학교교육활동과의 연계성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업일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<신설 2018.7.13>

⑤ 이외 교외 체험학습의 운영에 따른 세부시행 방법과 절차는 본교에서 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른다.<신설 2018.7.13>

제 11조 (고사) ①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위하여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지필평가는 1차고사, 2차고사를 구분 실시한다.<2011.7.12. 개정> <개정 2018.7.13>

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

③ 고사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

제 12조 (학년 및 학기)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,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당해 여름방학까지, 제 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13조(휴업일)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경일
2. 공휴일
3. 개교기념일 : 4월1일
4.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<개정 2011.7.12. >
5. <삭제 2018.7.13.> 재량휴업일<신설 2018.7.13.>

③ 제 1 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, 효도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생의 등교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6 장 수료 및 졸업

제 14조 (과정수료)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제 10조 교육과정 이수 등을 평가하여 인정한다.<개정 2011.7.12. >

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/3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15조 (수료 및 졸업)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는 제14조 과정 수료의 인정에 의한다.<개정 2011.7.12. >

②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 <개정 2011.7.12. >

제 7 장 입학, 전학, 편입학, 재입학

제 16조 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17조 (입학방법)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입학 전형절차에 의하여 배정되어야 하고,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>

제 18조 (전·편입학) 본교에 전·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학년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.>

1.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3>

제 19조 (재입학) 본교 또는 타학교를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

이수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정원 외로 재학시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2011.7.12. >

제 20조 (입학서류)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1조 (전·편입학 서류) 본교에 전·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한 학교에서 본교가 요구하는전·편입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22조(서약서) 입학(전, 재, 편입학 포함)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조 (보증인)<삭제 2011.7.12. >

제 8 장 휴학, 퇴학 및 상벌

제 24조 (휴학)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진단서 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.

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
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25조 (자퇴) 스스로 퇴학(타교 전학을 포함한다)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6조 (표창) ①학교장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품행이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②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.<신설 2011.7.12. >

③ 기타 학생 표창은 시상규정과 학교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<신설 2011.7.12. >

제 27조 (징계 등) ① 학교장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대하여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1. 학교 내의 봉사

2. 사회봉사

3. 특별교육 이수

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<신설 2011.7.12. >

5. 퇴학

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징계외의 지도방법,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

에 관한 사항 등은 학교생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28조 (퇴학처분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학교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12. >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학업의욕이 없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.<개정 2011.7.12. >
3. 정치에 관여하여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<개정 2011.7.12. >
4. 기타 법에 저촉되어 학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.<2011.7.12. 개정>

②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명할 때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11.7.12. ><개정 2018.7.13.>

③ 학교장은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 동안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3.>

제 9 장 수업료, 입학금, 기타의 비용 징수

제 29 조 (수업료 및 입학금)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법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30조 (징수금 감면)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에 따른다.<개정 2011.7.12. >

제 31조 (체납자조치) 징수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 대하여 세입금 납입 독촉장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할 수 있으며,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3.>

제 10 장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

제 32조 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 33조 (조기진급의 범위)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.

제 34조 (대상자 선정)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 검사결과 등을

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.

제 35조 (대상자 학습방법)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,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,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,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, ⑤ 여름방학 심화과정·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

제 36조 (이수인정 평가)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.

제 37조 (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(교감, 교무부장, 연구부장)와 교육과정 전문가(교과 담임교사), 학급담임 교사등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수립
2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
5. 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일정의 결정, 평가도구선정·제작, 조기이수인정기준 결정은 조기이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.

제 11 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 선출 <삭제 2011.7.12. >

제 38조 (학교의 학부모대표 선출) <삭제 2011.7.12. >

제 39조 (학부모대표선출관리위원회) <삭제 2011.7.12. >

제 12 장 학생 자치 활동

제 40조 (학생자치활동의 보장)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권장·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41조 (학생회구성)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.

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8.7.13.>

제 13 장 교과과정·수업일수·교사·과정수료·졸업

제 42조 (수업운영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현장체험학습은 테마중심현장체험학습, 학교 간 이동식 체험학습,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·방문체험학습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.

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 간 이동체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운영 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월(4주)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, 테마중심현장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 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 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탐구활동, 체험활동, 노작실습활동, 봉사활동운영 등으로 한다.

⑤ 운영방안은 개인별, 소집단별, 학급별, 학년별로 한다.

⑥ 이외 현장체험의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4 장 기숙사 운영<신설 2011.7.12. >

제 43 조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.

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숙사 운영과 기숙사생의 복무 규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제 15 장 학 칙 개 정

제 44조 (학칙 개정 절차) 학칙 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며 학생회의 의견을 듣고,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<개정<2011.7.12. >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.(세부사항)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을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9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.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